

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6월 20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5월 28일, 정재동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5월 28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4년 6월 20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「주거기본법」에 따라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, 지원계획 수립 시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등 금천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신설함으로써 금천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신혼부부, 최저주거기준 미달 거주민 및 비주택 거주민을 추가함(안 제2조제2호바목 및 사목 신설)
- 2) 지원계획 수립 시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등 금천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함(안 제4조제3항 신설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개정 이유

- 본 개정안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, 지원계획 수립 시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등 금천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신설하기 위해 의원 발의되었음.

2) 주요 내용

- 가)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신혼부부, 최저주거기준 미달 거주민 및 비주택 거주민을 추가함(안 제2조제2호바목 및 사목 신설)
- 「주거기본법」 제3조, 제18조에 따라 신혼부부(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), 최저기준 미달 거주민 등을 지원대상자로 추가 신설함
- 나) 지원계획 수립 시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등 금천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함(안 제4조제3항 신설)
- 주거지원계획 수립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 구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

3) 검토 의견

- 본 개정안은 주거복지 대상자를 확대하고 금천구민의 의견을 반영한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신설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